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72

발의연월일: 2021. 3. 5.

발 의 자: 주철현·문진석·김민기

윤영찬 • 윤재갑 • 이해식

서영교 · 김영호 · 신영대

민형배 · 조오섭 · 박찬대

서삼석 · 이개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청장이 산림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조림계획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20년마다 수립되는 산림기본계획으로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대림 북상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식생변화 ·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조 림계획이 도시림 기본계획과 같이 10년마다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려

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3.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조림계획을 변 경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⑨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수립한 산림조림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 여 조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 림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⑨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자료의제출을요구받은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